

정기 금융정보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고찰

유혜영

한세대학교 국제경영학과 조교수

채수준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조교수

A Study on the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Hae-Young Ryu^a, Soo-Joon Chae^b

^aDepartment of International Business, Hansei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bCollege of Busines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ceived 30 November 2017, Revised 14 December 2017, Accepted 22 December 2017

Abstract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engaging i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to tackle tax evasion. The same goal became the basis of the enactment of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by the United States Congress. In order to establish a common approach to counter tax evasion among different countries, the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released the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in Tax Matters which consists of the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CAA) and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Specifically,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s the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between Tax Authorities in relevant countries. The law requires this information to be collected by financial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for reporting to Tax Authorities.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s made up of two information sharing frameworks: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and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Under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ll financial institutions must identify accounts held by customers who are foreign tax residents or entities connected to foreign tax residents. Financial institutions must report these to the relevant Tax Authority who will then automatically exchange the account information with the relevant foreign Tax Authorities.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domestic laws to require financial institutions to collect and report this information and has entered into international agreements to exchange the information with other governments. This paper analyzed the FATCA and CRS rules overall and proposed solutions for the legal and practical issues.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by considering two information sharing frameworks.

Keywords: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JEL Classifications: F38, F65, G28, H26

^a First Author, E-mail: hyryu@hansei.ac.kr

^b Corresponding Author, E-mail: sjchae@kangwon.ac.kr

© 2017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2008년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파급된 대규모의 금융 위기는 과거의 경제대공황에 준하는 국제적 혼란을 야기하였다. 이에, 각국 정부들은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악화를 우려하여 세원을 증대하고, 역외 탈세를 근절하고자 노력해왔다.

‘역외탈세’란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기업을 만든 뒤 수출입 거래 및 수익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조작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역외소득)에 대해서도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해외 소득의 경우, 노출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이를 악용한 탈세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아울러, 역외탈세는 그 과정이 복잡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수법 역시 지능화되고 있어 추적이 어려운 실정이다.

역외탈세를 적발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각국 정상들은 2009년 G20 회담에서 은행 비밀주의의 종결을 선언하고 조세피난처 국가에 대한 제재안을 표명하였다. 이후, 미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정기적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해당 제도는 금융계좌보유자의 정보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케 함으로써 납세의 무지들의 탈세행위에 대한 적발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우리나라 및 아시아권 국가 들 역시 역외 탈세를 근절하고자 금융정보 교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홍콩은 2017년 역외탈세를 막고자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기로 하는 ‘한-홍콩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서명하였다. 한국 정부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과의 양자 간 협정과 다자 간 협정을 병행해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는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본 연구는 정기 금융정보 교환제도의 한국 도입과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국내 선행 연구들은 미국 모델인 해외금융계좌 납세준수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을 소개하고 제도의 시행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Park Sung-Hoo, 2011; Suh Byung-Ho, 2012; Kim Jung-Koo, 2013). 아울러, FATCA 제도 도입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대응방안에 대해 정리하고(Koh Yun-Sung and Yoo Young-Ha, 2014; Kim Su-Sung and Moon Seong-Hoon, 2014; Kim Tae-Kyung and Byun Hye-Jung, 2015; Jeong Jae-Yeon and Ryu Hae-Young, 2015), 제도의 이행과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을 제시하였다(Oh Yoon and Lee Jin-Young, 2012).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미국 FATCA 제도 위주의 국내 선행연구들과 달리, 미국모델 및 OECD 모델을 망라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기 금융정보 교환제도의 도입과정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동시에 관련 이행규정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제도 도입에 따른 정책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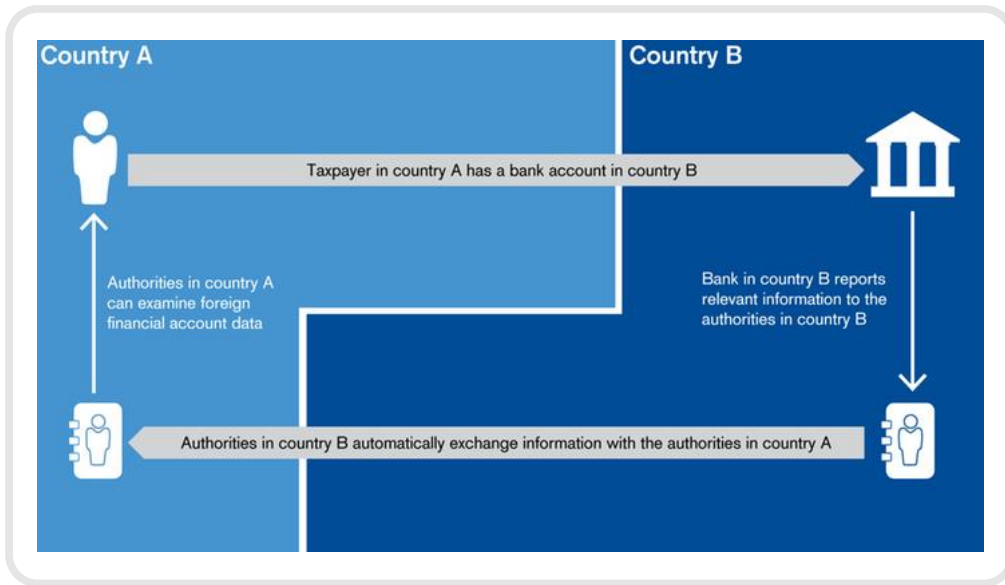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 장에서는 정기 금융정보 교환제도의 의의에 대해 살펴본 뒤, FATCA 및 CRS를 비교 분석한다. III 장에서는 현행 이행규정을 분석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IV 장에서는 연구를 정리하고 연구의 공헌도 및 제도의 운영에 대해 논의한다.

II. 정기 금융정보 교환제도의 의의와 제도의 비교

과세당국이 조세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1) 2017.1.23 KBS 뉴스에서 발췌

Fig. 1.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Source: OECD)



는 납세자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과 과세당국 간에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교환하는 조세조약에 따른 정보교환 방법이 있다(Lee, Eun-Mi, 2011). 한국의 정기 금융정보 교환제도 도입은 해외금융계좌납세 준수법(FATCA)과 다자간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공통보고기준(CRS)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본 절에서는 정기 금융정보 교환제도의 의의에 대해 정리한 후 FATCA와 CRS에 대해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1. 정보교환제도의 의의

1) 금융회사 측면

정보교환제도의 이행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들은 비거주자 소유의 금융계좌를 파악한 뒤, 계좌소유자에 대한 정보, 계좌 잔액, 해당 계좌로 지급된 소득 등의 정보를 국세청을 경유하여 상대국에 제공해야 한다. FATCA 협정의 경우, 의무를 불이행하는 금융회사는 미국 원천소득의 30%를 원천징수 당하게 된다. 따라

서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금융회사들은 정보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유인이 있으며, 정부는 제도의 원활한 이행되도록 이행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2) 한국 거주자 측면

정보교환제도의 시행은 법인 및 개인들로 하여금 해외소재 역외재산과 소득을 성실히 납세신고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정보교환 제도를 통해 한국 정부는 상대국으로부터 상대국에 개설된 한국 거주자 소유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게 된다. 즉, 한국의 과세당국이 한국 거주자의 역외금융재산 및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므로, 법인 및 개인들은 소득을 줄이거나 탈루하지 못하게 된다. 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국세청은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²⁾

2) 2016.01.17. 국세청 보도자료,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조사역량 집중,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3월말까지 반드시 자진신고 해야’ 국가 간 공조를

Fig. 2. Multilateral Tax Information Exchange Initiatives Based at the OECD (Source: OECD)



2. 제도의 비교

1)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납세준수법(FATCA)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도록 한 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는 본래 갱단의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1970년대 만들어진 제도이다. 미국 재무부 관할의 FBAR 제도는 국세청 산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탄생으로 이어졌는데, 금융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 본격 시행된 것이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이다.³⁾

통한 정보교환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세청이 해외계좌 정보를 수집,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역외소득재산 은닉 등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따라서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 당국의 제재조치를 받게 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 2017.1.6. the bell news article.

구체적으로, 미국은 2010년 미국 외 지역의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미국 납세의무자가 개설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매년 미국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해외금융계좌납세준수법(FATCA)을 제정하였다. 만약, 미국 외 지역의 금융기관이 미국 납세자와 관련된 정보를 미국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미국 원천소득의 30%를 원천징수 당하게 된다.

한편, 해외금융계좌납세준수법(FATCA)은 미국 법률이므로, 미국 외 지역의 금융기관이 FATCA를 시행하는 경우, 미국법률과 금융기관이 소재한 국가의 법률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외 국가들은 미국 정부와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2014년부터 FATCA 제도를 이행하였다.

FATCA 제도의 도입으로, 미국은 상대국으로부터 미국 납세의무자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된다. 상대국 정부 역시 미국 정부로부터 상대국 납세의무자의 미국금융계

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및 각국 정부는 미신고 및 탈루소득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게 되었다.

2) OECD의 정기 금융정보 교환제도

유럽에서도 다자간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를 교환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OECD 소속 국가들은 2014년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 교환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f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MCAA)’에 서명하는 한편, 다자간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공통 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을 제정하였다.

MCAA 참여 국가의 금융기관은 상대국가의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매년 국세청을 통해 상대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FATCA의 경우, 보고대상은 미국 거주자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도 포함된다. 반면, MCAA의 경우에는 각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보고대상이 된다.

III. 현행 이행규정 분석 및 개선방안

한미 FATCA 협정이나 CRS 협정은 국가 간의 의무를 정한 협정이다. 아울러, 협정 자체로 금융기관의 실사 및 보고의무가 부여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내 금융기관들에게 해당 의무를 부과하고자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먼저, 국제조세법 제31조는 조세조약에 따른 개별적 금융정보 제공 요청을 위한 경우(제2항)와 함께,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규정(제3항 내지 제10항)을 두고 있는데, 한미 FATCA 협정이나 CRS 관련 협정은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 요청에 해당한다. 이행규정은 국제조세법 제31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

11항에 근거하여, 조세조약(FATCA 협정 및 CRS 관련 협정)에 따른 계약상대국과의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사항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기 금융정보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은 2014년 6월 한미 FATCA 협정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 제정하였다. 이후, 2015년 10월 다자간 협정이 체결되면서 2015년 12월에 이행규정이 전면 개정되었다.

1. 협정 및 현행 이행규정의 형식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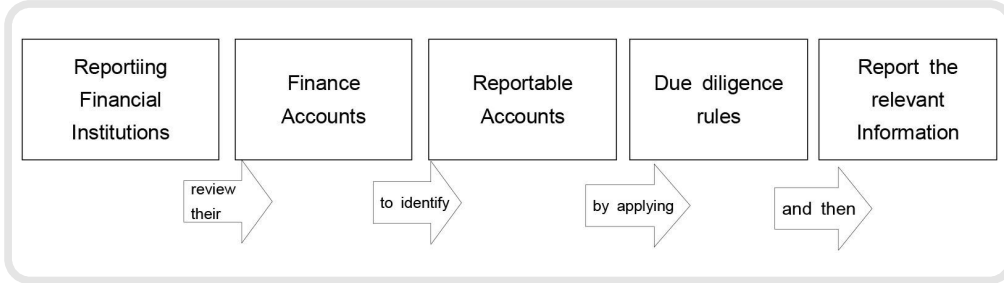
1) CRS 협정과 한미 FATCA 협정

CRS 협정의 주요내용은 보고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 중에서 보고대상 계좌를 식별하기 위하여 실사의무를 이행하고 그에 따라 식별된 정보에 관한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형식상 CRS 관련 협정은 과세 당국간의 의무(금융정보의 교환)를 규정하는 CAA와 금융기관의 실사 및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CRS가 분리되어 있다. CRS는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보고 및 실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과 용어의 정의 등의 부가적인 사항으로 나뉜다.

한미 FATCA 협정의 경우, 한미 정부 간의 의무사항을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하고, 금융기관의 의무 사항은 제4조 및 부속서 I에서 규정하는 구조이다. 한미 FATCA 협정은 한국 금융기관이 실사 및 보고의무와 등록의무 등 일정한 의무 이행 시 미국 세법상 FATCA 불이행에 따르는 불이익(원천징수)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해볼 때 CRS 관련 협정과 한미 FATCA 협정은 유사한 규정 체계를 갖고 있다. 물론 내용 상 일부 차이가 있는데, 현행 이행규정은 양자를 원칙적으로 하나의 조항에 규정하면서 차이점을 명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Fig. 3. An overview of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Source: CRS Implementation Handbook, OECD)



2) 현행 이행규정

CRS 관련 협정과 한미 FATCA 협정은 유사한 규정 체계를 갖고 있고, 내용의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다. 현행 이행규정은 별도의 장 구분 없이 CRS 관련 협정과 한미 FATCA 협정의 이행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CRS와 FATCA 모두 일정한 금융계좌는 금융계좌의 개념에 해당하더라도 세법상 특례 등을 근거로 보고대상 계좌에서 제외되는데 현행 이행규정은 제23조에서 함께 규정하면서, 제7항에서는 CRS 관련 협정에서만 적용되는 사항을 제8항에서는 FATCA 협정에서만 적용되는 사항을 언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현행 이행규정은 양자를 원칙적으로 하나의 조항에 함께 규정하면서 차이점을 따로 표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2. 개선방안

1) 형식측면에서의 개선방안

현행 규정에서는 CRS와 FATCA를 동일한 체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 방식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대체적으로 CRS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FATCA 관련 사항은 예외적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일부는 FATCA를 원칙으로 규정하

는 경우도 있다. 특히, FATCA에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보고대상 미국 계좌의 경우”로 규정한 경우와 “보고대상 관할권이 미국인 경우”가 혼용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CRS와 FATCA에 관한 구분 방식 및 용어 등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의 편의나 이해도 측면에서는 일관된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OECD 이행핸드북의 내용을 참고하여, FATCA와 CRS의 차이점을 정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2) 내용측면에서의 개선방안

(1) 조세조약과의 관계

“제2조(적용)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실시절차 등은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OECD 공통보고기준 (이하 “공통보고기준” 또는 “CRS”(Common Reporting Standard)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보고대상 관할권이 미국인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조에 따른 내국세법(이하 “미국 세법”이라 한다) 제1471조부터 제1474조까지(이하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또는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라 한다) 및

한·미 정부간 FATCA협정에 따른다.”

이행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행규정 제2조를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다자간 협정과 관련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보고기준(CRS)을 따른다. 그리고 한미 FATCA 협정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세법 기준과 한미 FATCA 협정을 따른다. 그런데, 이행규정을 적용하면서 관련 기준 및 협정을 일일이 참고하기란 쉽지 않다. 나아가 FATCA 협정의 경우 관련 협정은 물론 미국 세법까지 참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한미 FATCA 협정과 미국 세법의 내용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2) 보고대상 관할권과 참여관할권

“제3조(금융회사) ⑦ 이 규정에서 “보고대상 관할권”이란 우리나라와 제1조에 따른 조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제5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⑫ 이 규정에서 “수동적 비금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능동적 비금융단체가 아닌 모든 비금융 단체
2. 다른 금융회사에 의해 전문적으로 관리 되는 투자단체로서 보고대상 관할권 금융회사가 아닌 단체
3. 미국 재무부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 해외 조합 또는 원천징수 해외신탁이 아닌 모든 비금융단체(보고대상 관할권이 미국인 경우에 한한다)”

이행규정 제3조 제7항은 CRS 제8조 제4항 라목 또는 마목에 대응하는 규정이다. CRS 제8조 제4항 라목에서 “보고대상 관할권”(Reportable Jurisdiction)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중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

는 국가⁴⁾를 의미하는 반면, 마목의 “참여관할권”(Participating Jurisdiction)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전체⁵⁾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념상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보고대상 관할권”과 “참여관할권”을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3) 금융기관 지분

“제4조(금융계좌) ① 이 규정에서 “금융계좌”란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계좌로서 예금계좌, 수탁계좌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른 제외계좌는 보고 금융계좌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1. 투자단체라는 이유로 금융회사인 단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본지분 또는 채무지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지분 또는 채무지분으로서 제16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경우. 다만, 증권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제외하며 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에는 자본지분 또는 채무지분의 가치가 주로 미국 원천징수대상 지급액을 발생시키는 자산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결정된 것이어야

4) a jurisdiction with which an agreement is in place pursuant to which there is an obligation in place to provide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Section I

5) a jurisdiction with which an agreement is in place pursuant to which it will provide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Section I

한다.”

자산운용사 지분의 경우, 한미 FATCA 협정에서는 비보고 금융기관의 하나로 취급하는 반면, CRS에서는 자산운용사를 비보고 금융기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금융계좌 지분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CRS에서는 자산운용사가 보고의무를 부담하되, 상장된 펀드 지분과 달리 자산운용사 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행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가 존재하는지 확인한 후 해당하는 계좌가 없다면 보고대상 계좌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

(4) 특수단체에 관한 사항

“제5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⑧ 이 규정에서 “특수관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두 단체가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에 정의된 확장계열사그룹의 일원이 아닌 경우 다른 단체의 특수관계단체가 아닌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1. 한 단체가 다른 단체를 지배(단체의 의결권 또는 가액의 과반수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2. 두 단체가 공통된 지배 아래에 있는 경우
3. 하나의 단체에 의해 실사 의무가 이행되는 투자단체의 경우 해당 투자단체”

CRS에 의하는 것이 보고대상 범위가 넓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행규정에서 한미 FATCA 협정에 따름으로써 보고대상 범위를 좁게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CRS 협정 위반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제5조 제8항 제3호에서 “하나의 단체에 의해 실사 의무가 이행되는 투자단체의 경우 해당 투자단체”로 명시한 부분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IV. 결론

200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각국의 정부들은 증가하는 재정적자를 줄이고자 세정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소득 및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등의 역외탈세 적발을 위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며, 한국은 국제적 공조를 통해 역외탈세를 차단하고자 2010년 OECD의 공조조약에 가입하였다.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들은 거주지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더불어 국외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하나, 거주지국에 의한 적발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미국 및 각국 정부는 FATCA 및 CRS 도입을 통해 납세의무자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해당 제도들은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미신고 및 탈세행위를 근절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FATCA제도 및 CRS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과 논의를 거쳐 시행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역시 국회비준을 거쳐 본격적으로 제도가 이행되고 있다. 올해 국세청을 통해 미국국세청에 대한 첫 번째 보고가 이루어졌다.

현행 이행규정은 다양한 형태의 조세조약을 하나의 체계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금융기관 실무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적용하기 쉽지 않고, 조세조약이 추가로 체결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다 명확하고 간결한 체계 및 내용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기 금융정보 교환제도의 도입이 국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두 제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책당국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도관련 이행규정들을 분석함으로써, 도입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개선점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References

- Jeong, Jae-Yeon and Hae-Young Ryu (2015), "The Impact of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and the Korea-U.S. Intergovernmental Agreement (Korea-U.S. IGA) on Insurance Companie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8(5), 1345-1365.
- Kim, Jung-Koo(2013), "Introduction to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Seoul, Economics and Law Publishing Co.
- Kim, Su-Sung and Seong-Hoon Moon(2014), "The Response Measures and the Impact in Taxation to the Introduction of Foreign Accounts Tax Compliance Act(FATCA)",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15(5), 163-193.
- Kim, Tae-Kyung and Hye-Jung Byun (2015), "Issues on 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line with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Ewha Law Journal*, 20(1), 31-67.
- Koh, Yun-Sung and Young-Ha Yoo(2014), "The Influence of USA's FATCA System and Countermeasures of Korea", *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 31(1), 135-176.
- Lee, Eun-Mi(2011), "Study on Foreign Assets, the Information Collection and Exchange of Information System," *Tax Study*, 11(3), 59-101.
- Oh, Yoon and Jin-Young Lee(2012), "The Role of 'Resident' Concept in the Age of Free Trade Agreements," *Journal of IFA*, 28(1), 129-166.
- Park, Sung-Hoo(2011),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Overview of Current Law and Legislation," *Bulls Review*, 12, 25-32.
- Suh, Byung-Ho(2012), "FATCA's ripple effects," *Weekly Financial Brief*, 23(31), 8-9.
- The bell news article. "Proper FATCA documentation", 2017.1.6.
- KBS news. "Korea-Hong Kong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Signed" 2017.1.23